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9일, 조인철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2026.3.9.자로 직접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인철의원)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구 개발(R&D) 역량, 첨단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그 결과 다수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보유한 산업·인재·기술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연구 성과 또한 지역 내 축적·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확산시키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전인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없 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